

ハングル

개호보험제도

나 고 야 시

2024년도

개호보험제도

본 시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75 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고 베이비붐 주니어 세대가 65 세 이상이 되는 2040년을 향해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어 특히 75 세 이상 고령자 외에 독거 고령자나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치매 고령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호보험제도는 개호가 필요한 분의 상황과 가족 희망에 따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노후의 불안 요소인 개호 문제를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호보험 재원>

○재택 서비스의 경우

공 비 50%	정부 20%	국가조정 교부금 5%	도도부현 12.5%	시정촌 12.5%
보험료 50%	제 1 호 피보험자(65 세 이상인 분) 보험료	23%	제 2 호 피보험자(40~64 세인 분) 보험료 27%	

○시설 등 서비스의 경우

공 비 50%	정부 15%	국가조정 교부금 5%	도도부현 17.5%	시정촌 12.5%
보험료 50%	제 1 호 피보험자(65 세 이상인 분) 보험료	23%	제 2 호 피보험자(40~64 세인 분) 보험료 27%	

1 기관

본 시에서는 구청 복지과가 창구가 되어 피보험자 자격, 요개호 인정 등, 보험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소 구민복지과에서도 피보험자 자격, 요개호 인정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간접 신청의 우편 접수 및 인정 통지 발송 등 업무는 인정 사무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介護保険制度

本市では、団塊の世代が75歳以上となる2025年（令和7年）を迎える、団塊ジュニア世代が65歳以上となる2040年（令和22年）に向けて更に高齢化が進み、特に75歳以上の高齢者のほか、ひとり暮らし高齢者や、高齢者のみで構成される世帯、認知症の高齢者が増加すると見込まれています。

介護保険制度は、介護を必要とする方の状況や家族の希望に応じて保健・医療・福祉のサービスを総合的に提供し、老後の不安要因である介護の問題を社会全体で支え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介護保険の財源＞

○在宅サービスの場合

公 費 50%	国 20%	国の調整 交付金 5%	都道府県 12.5%	市町村 12.5%
保険料 50%	第1号被保険者（65歳以上の方） の保険料 23%			第2号被保険者（40～64歳の方）の保険料 27%

○施設等サービスの場合

公 費 50%	国 15%	国の調整 交付金 5%	都道府県 17.5%	市町村 12.5%
保険料 50%	第1号被保険者（65歳以上の方） の保険料 23%			第2号被保険者（40～64歳の方）の保険料 27%

1 機関

本市では、区役所福祉課が窓口となり、被保険者資格、要介護認定等、保険料の賦課徴収等の業務を行っており、支所区民福祉課においても被保険者資格、要介護認定申請の受付等の業務を行っています。

なお、更新申請の郵送受付や認定通知の発送などの業務は、認定事務センターで集約して行っています。

2 피보험자(개호보험에 가입하신 분)

피보험자에는 제 1 호 피보험자와 제 2 호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제 1 호 피보험자	본 시에 주소를 둔 65 세 이상인 분
제 2 호 피보험자	본 시에 주소를 둔 40~64 세인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

나고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은 나고야시의 개호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적격 재류 자격을 가지고 3 개월 이상 일본에 재류 예정인 분(입국관리국이 인정한 분. 단 대사관원 등 공용 비자를 소지한 분은 제외합니다.)
- 40 세 이상인 분(단, 65 세 미만인 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류 기간이 3 개월 이하라도 생활 실태로 보아 3 개월을 넘어 재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분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복지과 또는 지소 구민복지과에 신청해 주십시오.

피보험자증은 제 1 호 피보험자 전원과 제 2 호 피보험자 중 보험증 교부를 신청한 분 또는 요개호 인정 등의 신청을 하신 분에게 교부합니다.

2 被保険者（介護保険に加入する方）

被保険者には第1号被保険者と第2号被保険者があります。

第1号被保険者	本市に住所を有する65歳以上の方
第2号被保険者	本市に住所を有する40～64歳の医療保険に加入している方

名古屋市にお住まいの外国人の方で次の要件に全てあてはまる方は、名古屋市の介護保険に加入していただきます。

- 住民登録をされている方
- 適格な在留資格を有し、3か月を越えて日本に滞在予定の方（入国管理局が認めたもの。ただし、大使館員など公用ビザを持っている人は除きます。）
- 40歳以上の方（ただし、65歳未満の方については、日本の公的医療保険に加入していることが必要です。）

なお、在留期間が3か月以下であっても生活実態から3か月を越えて滞在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方は、加入していただきます。お住まいの区の区役所福祉課または支所区民福祉課にお届けください。

被保険者証は、第1号被保険者全員と、第2号被保険者のうち保険証の交付申請のした方及び要介護認定等の申請をした方に交付します。

3 개호 보험료

(1) 제 1 호 피보험자(65 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

보험료 금액은 소득 등에 따라 18 단계로 됩니다. 저소득인 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6년도 각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료액

보험료 단계 구분			보험료(연 액))
제 1 단계	생활보험 등을 받는 분, 또는 노령복지연금 수급자로 세대원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인 분		20,851 엔 (기준액×0.25)
제 2 단계	세대원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	본인의 연금수입과 총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한 소득분 제외) 합계가 80 만 엔 이하인 분	20,851 엔 (기준액×0.25)
제 3 단계		본인의 연금수입과 총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한 소득분 제외) 합계가 80 만 엔을 초과하고 120 만 엔 이하인 분	33,362 엔 (기준액×0.4)
제 4 단계		본인의 연금수입과 총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한 소득분 제외) 합계가 120 만 엔을 초과하는 분	57,132 엔 (기준액× 0.685)
제 5 단계	본인이 시정촌민세 비과세로 동일 세대에 시정촌민세 비과세 있음	본인의 연금수입과 총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한 소득분 제외) 합계가 80 만 엔 이하인 분	70,893 엔 (기준액×0.85)
제 6 단계		본인의 연금수입과 총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한 소득분 제외) 합계가 80 만 엔을 초과하는 분	83,403 엔 (기준액)
제 7 단계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80 만 엔 미만인 분	87,574 엔 (기준액×1.05)
제 8 단계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80 만 엔 이상 120 만 엔 미만인 분	91,744 엔 (기준액×1.1)
제 9 단계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125 만 엔 이상 200 만 엔 미만인 분	104,254 엔 (기준액×1.25)
제 10 단계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200 만 엔 이상 290 만 엔 미만인 분	125,105 엔 (기준액×1.5)
제 11 단계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290 만 엔 이상 400 만 엔 미만인 분	141,786 엔 (기준액×1.7)
제 12 단계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400 만 엔 이상 520 만 엔 미만인 분	158,466 엔 (기준액×1.9)
제 13 단계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520 만 엔 이상 620 만 엔 미만인 분	175,147 엔 (기준액×2.1)
제 14 단계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620 만 엔 이상 720 만 엔 미만인 분	191,827 엔 (기준액×2.3)
제 15 단계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720 만 엔 이상 820 만 엔 미만인 분	208,508 엔 (기준액×2.5)
제 16 단계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820 만 엔 이상 1,000 만 엔 미만인 분	225,189 엔 (기준액×2.7)
제 17 단계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1,000 만 엔 이상 1,500 만 엔 미만인 분	241,869 엔 (기준액×2.9)
제 18 단계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1,500 만 엔 이상인 분	258,550 엔 (기준액×3.1)

3 介護保険料

(1) 第1号被保険者（65歳以上の方）の保険料

保険料の額は、所得などに応じて18段階となっています。低所得の方の負担が重くならないように配慮されています。

令和6年度から令和8年度の各年度に納めていただく保険料は次のとおりです。

ア 保険料額

保険料段階区分		保険料(年額)
第1段階	生活保護等を受けている方、又は老齢福祉年金受給者で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の方	20,851円 (基準額×0.25)
第2段階	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	本人の年金収入と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の合計が80万円以下の方 20,851円 (基準額×0.25)
第3段階		本人の年金収入と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の合計が80万円を超える120万円以下の方 33,362円 (基準額×0.4)
第4段階		本人の年金収入と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の合計が120万円を超える方 57,132円 (基準額×0.685)
第5段階	本人が市町村民税非課税で同じ世帯に市町村民税課税者あり	本人の年金収入と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の合計が80万円以下の方 70,893円 (基準額×0.85)
第6段階		本人の年金収入と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の合計が80万円を超える方 83,403円 (基準額)
第7段階	本人が市町村民税課税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80万円未満の方 87,574円 (基準額×1.05)
第8段階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80万円以上125万円未満の方 91,744円 (基準額×1.1)
第9段階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125万円以上200万円未満の方 104,254円 (基準額×1.25)
第10段階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200万円以上290万円未満の方 125,105円 (基準額×1.5)
第11段階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290万円以上400万円未満の方 141,786円 (基準額×1.7)
第12段階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400万円以上520万円未満の方 158,466円 (基準額×1.9)
第13段階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520万円以上620万円未満の方 175,147円 (基準額×2.1)
第14段階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620万円以上720万円未満の方 191,827円 (基準額×2.3)
第15段階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720万円以上820万円未満の方 208,508円 (基準額×2.5)
第16段階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820万円以上1,000万円未満の方 225,189円 (基準額×2.7)
第17段階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1,000万円以上1,500万円未満の方 241,869円 (基準額×2.9)
第18段階		本人の合計所得金額が1,500万円以上の方 258,550円 (基準額×3.1)

-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10 엔 미만의 끝수를 버린 금액입니다.
- 연금수입에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등 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총소득금액이란 전년 1 월부터 12 월까지의 1 년 동안의 연금소득, 급여소득, 사업소득, 토지 및 건물 등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시정촌민세 비과세자(제 2 단계~제 6 단계)는 급여소득금액(급여소득과 연금수입에 관한 소득 모두를 가진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금액 조정공제 전 금액)에서 10 만 엔을 공제합니다. 총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 엔으로 계산합니다.

나 납부 방법

노령·퇴직, 유족, 장애연금 중 어느 하나라도 연액 18 만 엔 이상 수급하는 분은 연금에서 공제(특별징수)합니다. 특별징수 이외의 분은 계좌이체(자동이체) 또는 납부서로 납부(보통징수)하셔야 합니다.

다 보험료 납부 유예 및 감면

재난으로 인해 주택 등에 현저한 피해를 입었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분은 신청에 따라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복지과 또는 지소 구민복지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라 미납자에 대한 조치

지정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 사례에 따라 압류를 위해 근무처에 대한 급여 조사 등의 재산조사를 하고 재산 압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없이 보험료를 1 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개호 서비스·개호 예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미납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호보험의 급부에 대해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받더라도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1 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개호 서비스·개호 예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비용 전액을 일단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구청에 신청하면 보험 급부가 추후에 환급됩니다.

○ 보험료를 1 년 6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개호 서비스·개호 예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비용 전액을 일단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구청에 신청해도 보험 급부의 환급이 일시 정지되어 미납 보험료에 총당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2 연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인상되고(※), 고액의 개호 서비스비 등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 부담 10% 또는 20%인 분→30%

이용자 부담 30%인 분→40%

- 実際に納めていただく保険料は10円未満を切り捨てた額になります。
- 年金収入には、遺族年金や障害年金などの非課税年金は含まれません。
- 合計所得金額とは、前年の1月から12月までの1年間の年金所得、給与所得、事業所得、土地・建物等や株式等の譲渡による所得などを合計した金額です。なお、土地・建物等の譲渡所得に係る特別控除が適用される場合は、この控除額を差し引いた金額となります。また、市町村民税非課税者（第2段階～第6段階）においては、給与所得金額（給与所得と年金収入に係る所得の双方を有する場合に適用される所得金額調整控除前の金額）から10万円を控除します。なお、合計所得金額がマイナスの場合は0円として計算します。

イ 納付方法

老齢・退職、遺族、障害年金のうちいずれか1つでも年額18万円以上受給されている方は、年金から天引き（特別徴収）します。特別徴収以外の方は口座振替（自動払込）または納付書により納付（普通徴収）していただきます。

ウ 保険料の納付の猶予・減免

災害により住宅などに著しい損害を受けたことや、生計を支えている方が長期間入院したことなどにより、保険料の納付にお困りの方は、申請により保険料の納付が猶予または減免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お住まいの区の区役所福祉課または支所区民福祉課にご相談ください。

エ 未納者に対する措置

指定期限までに保険料をお支払いいただけない場合は、地方税の滞納処分の例によって、差押えのために勤務先への給与調査等の財産調査が行われ、財産の差押え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

また、特別な事情もなく保険料を1年以上納めないと、介護サービス・介護予防サービスを利用したときに、納めていない期間に応じて以下のように介護保険の給付について制限を受けます。

なお、このような措置を受けても保険料の支払義務はなくなりません。

○保険料を1年以上納めないと

介護サービス・介護予防サービスを利用したとき、費用の全額をいったん利用者が支払うことになります。区役所に申請すると、保険給付が後日払い戻されます。

○保険料を1年6か月以上納めないと

介護サービス・介護予防サービスを利用したとき、費用の全額をいったん利用者が支払うことになります。区役所に申請しても保険給付の払い戻しが一時差し止められ、納めていない保険料に充て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保険料を2年以上納めないと

納めていない期間に応じて、利用者負担が引き上げられ（※）、高額介護サービス費等も支給されません。

※利用者負担1割または2割の方→3割

利用者負担3割の方→4割

(2) 제2호 피보험자(40세~64세인 분)의 보험료
의료보험 보험료에 개호보험 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국민건강보험료로 세대주가 납부하고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급여 및 상여금에서 징수됩니다.

(2) 第2号被保険者（40～64歳の方）の保険料

医療保険の保険料に介護保険分の保険料を合わせて納めます。国民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る方は国民健康保険料として世帯主が納め、職場の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る方は給与および賞与から徴収されます。

4 개호 서비스

(1) 개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분

개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요지원·요개호 인정을 받은 다음과 같은 분입니다. 이 인정에는 요지원 1, 2와 요개호 1~5의 7 가지 구분이 있으며 인정 조사 결과와 주치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각 구에 설치된 보건, 의료,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개호 인정 심사회에서 심사 및 판정을 합니다.

제 1 호 피보험자	개호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질병이나 부상 등 개호가 필요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개호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제 2 호 피보험자	뇌혈관 질환, 암(※) 등 노화에 따른 16 종류의 질병으로 인해 개호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 암: 의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지견에 근거하여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함.

★요개호 인정 등의 신청

신규 신청, 구분 변경 신청의 접수는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복지과 또는 지소 구민 복지과가 창구가 됩니다. 간접 신청의 접수는 개호 인정 사무센터에 우송 제출합니다.

본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이카이카 지원센터나 재택개호 지원사업자, 개호보험 시설 등이 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65 세 이상인 분(제 1 호 피보험자)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40~64 세인 분(제 2 호 피보험자)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 자격확인서
(2024년 12월 이후는 없어도 가능)

(2) 개호 서비스 등의 내용

개호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재택계 서비스와 시설 및 거주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택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요개호자는

4 介護サービス

(1) 介護サービス等を利用できる方

介護サービス等を利用できる方は、要支援・要介護の認定を受けた次の方です。この認定には、要支援1・2と要介護1～5の7つの区分があり、認定調査の結果と主治医の意見書をもとに、各区に設置された保健・医療・福祉の専門家からなる介護認定審査会で審査・判定を行います。

第1号被保険者	介護や支援が必要と認定された方（病気やけがなど介護が必要になった原因にかかわらず、介護サービスの対象となります。）
第2号被保険者	脳血管疾患やがん（※）など加齢に伴う16種類の病気により、介護や支援が必要と認定された方 ※がん：医師が一般に認められている医学的知見に基づき回復の見込みがない状態に至ったと判断したものに限る

★要介護認定等の申請

新規申請・区分変更申請の受付は、お住まいの区の区役所福祉課または支所区民福祉課が窓口となります。更新申請の受付は介護認定事務センターへの郵送でのご提出となります。

本人や家族だけでなく、いきいき支援センターや居宅介護支援事業者、介護保険施設等に申請を代行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

◆申請に必要なもの

- 65歳以上の方（第1号被保険者）
介護保険被保険者証

- 40～64歳の方（第2号被保険者）
加入している医療保険の被保険者証資格確認書
(令和6年12月以降は無くても可)

(2) 介護サービス等の内容

介護保険で利用できるサービスには、次の在宅系サービスと施設・居住系サービスがあります。在宅系サービスを利用するには、原則として要介護者は居宅介護支援事

재택개호 지원사업자에게, 요지원자는 이카이키 지원센터나 개호 예방 지원사업자에게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카이키 지원센터(지역 포괄 지원센터)란

이카이키 지원센터는 고령자의 가까운 상담 창구로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카이키 지원센터에는 보건사, 사회복지사, 주임 개호 지원 전문원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요지원 인정자의 케어 매니지먼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택계 서비스

자택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1. 방문개호 (홈 헬프 서비스)	홈헬퍼 등이 자택을 방문해 개호와 가사 지원을 합니다.
	2.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	홈헬퍼 등이 야간에 방문해 개호를 합니다.
	3. 방문 입욕개호	욕조를 실은 입욕차로 자택을 방문해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4. 방문 간호	간호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간호와 진료를 보조합니다.
	5. 방문 재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자택을 방문해 재활 치료를 합니다.
	6. 정기 순회,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낮과 밤을 통해 방문 개호와 방문 간호를 연계하여 단시간의 정기 순회형 방문과 수시 대응을 합니다.
	7. 재택요양관리지도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요양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합니다.
	8. 복지용품 대여	휠체어, 특수 침대, 경사로 등 복지용품을 대여해 드립니다. (요개호 정도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9. 복지용품 구입비 지급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복지용품을 구입했을 때 그 비용 일부를 지급합니다.
	10. 주택 개보수비 지급	개호를 위한 소규모 주택 개보수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11. 생활 원조형 배식 서비스 (시정촌 특별 급부)	이용자의 자택에 식사를 배달하는 동시에 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연락합니다.
당일 이용하는 서비스	12. 통원 개호(데이 서비스)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목욕이나 식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를 합니다.
	13. 지역 밀착형 통원 개호	정원이 18 명 이하인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목욕이나 식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를 합니다.
	14. 치매 대응형 통원 개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목욕이나 식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를 합니다.
	15. 통원 재활(데이 케어)	시설 등에서 의사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재활 치료를 합니다.
단기 비스 입소	16.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간, 특별 양호 양로원 등의 시설에 입소해 개호를 합니다.
	17.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단기간, 개호노인보건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하여 의학적 관리 아래 개호를 합니다.
기타 서비스	18.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소에 '내왕' 서비스 외에 '방문' '숙박'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합니다.
	19.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와 방문 간호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합니다.
	20. 재택 개호 지원	개호지원 전문원(케어매니저)이 개호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요개호인 분만 대상)
	21. 개호 예방 지원	본인 및 가족과 함께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요지원인 분만 대상)

業者に、要支援者はいきいき支援センターや介護予防支援事業者にサービス計画（ケアプラン）を作成し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

★いきいき支援センター（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とは

いきいき支援センターは高齢者の身近な相談窓口として地区ごとに設置されています。いきいき支援センターには、保健師・社会福祉士・主任介護支援専門員などが配置されており、要支援認定者のケアマネジメント等を行っています。

在宅系サービス

居宅で利用するサービス	1. 訪問介護 (ホームヘルプサービス)	ホームヘルパーなどが居宅を訪問して、介護や家事の援助をします。
	2. 夜間対応型訪問介護	ホームヘルパーなどが夜間に訪問して介護をします。
	3. 訪問入浴介護	浴槽を積んだ入浴車で居宅を訪問して、入浴の介護をします。
	4. 訪問看護	看護師などが居宅を訪問して、看護や診療の補助を行います。
	5. 訪問リハビリテーション	理学療法士や作業療法士、言語聴覚士が居宅を訪問して、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行います。
	6. 定期巡回・随時対応型 訪問介護看護	日中・夜間を通じて、訪問介護と訪問看護が連携しながら短時間の定期巡回型の訪問と随時の対応を行います。
	7. 居宅療養管理指導	医師・歯科医・薬剤師などが居宅を訪問して、療育上の管理や指導を行います。
	8. 福祉用具貸与	車いす、特殊寝台やスロープなどの福祉用具の貸し出しを行います。（要介護度によっては利用できないものもあります。）
	9. 福祉用具購入費の支給	指定を受けた事業者から福祉用具を購入したときに、その費用の一部を支給します。
	10. 住宅改修費の支給	介護のための小規模な住宅改修について、その費用の一部を支給します。
	11. 生活援助型配食サービス (市町村特別給付)	利用者の居宅に食事を配達するとともに本人の安否確認を行い、必要な場合には関係機関に連絡します。
日帰りで通う サービス	12. 通所介護（デイサービス）	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などの施設で、入浴や食事その他の日常生活に必要な介護をします。
	13. 地域密着型通所介護	定員が18人以下の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などの施設で、入浴や食事その他の日常生活に必要な介護をします。
	14. 認知症対応型通所介護	認知症の方を対象に、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などの施設で、入浴や食事その他の日常生活に必要な介護をします。
	15. 通所リハビリテーション (デイケア)	施設などで、医師の指示のもとに、理学療法士や作業療法士などが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行います。
サ短期 期入 所	16. 短期入所生活介護	短期間、特別養護老人ホームなどの施設に入所して、介護をします。
	17. 短期入所療養介護	短期間、介護老人保健施設などの施設に入所して、医学的管理のもとでの介護をします。
その他 サービス	18.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	事業所への「通い」サービスのほか、「訪問」や「泊まり」のサービスを組み合わせて提供します。
	19. 看護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と訪問看護のサービスを組み合わせて提供します。
	20. 居宅介護支援	介護支援専門員（ケアマネジャー）が介護サービス計画（ケアプラン）を作成します。（要介護の方のみ対象）
	21. 介護予防支援	本人や家族とともに介護予防サービス計画（ケアプラン）を作成します。（要支援の方のみ対象）

◆재택계 서비스의 이용 한도액

재택계 서비스에는 요지원, 요개호 정도에 따라 이용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택요양 관리지도, 복지용품 구입비 지급, 주택 개보수비 지급, 생활 지원형 배식 서비스(시정촌 특별 급부)는 제외합니다.)

요지원 1	1 개월당	5,032 단위
요지원 2	1 개월당	10,531 단위
요개호 1	1 개월당	16,765 단위
요개호 2	1 개월당	19,705 단위
요개호 3	1 개월당	27,048 단위
요개호 4	1 개월당	30,938 단위
요개호 5	1 개월당	36,217 단위

시설 · 거주계 서비스

시설, 거주계 서비스는 요개호 1~5로 인정받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따라 대상이 되는 분이 다릅니다.)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치매 환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주택에서 일상생활상의 지원과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지원 2 인 분도 대상입니다.)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지정을 받은 특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이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개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지원 1, 2 인 분도 대상입니다.)
지역 밀착형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정원 29 명 이하의 특정시설에서 개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노인 복지시설 (특별 양호 양로원)	상시 개호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개호가 어려운 와상 환자나 치매 환자에 대해 개호하는 시설입니다. ※ 원칙적으로 요개호 3~5로 인정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지역 밀착형 개호노인 복지시설 (특별 양호 양로원)	정원 29 명 이하의 소규모 특별 양호 양로원입니다. ※ 원칙적으로 요개호 3~5로 인정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개호 노인 보건시설	상태가 안정된 분이 재택 복귀를 목표로 재활 치료와 개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개호 의료원	장기 요양을 위한 의료와 일상생활상의 개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在宅系サービスの利用限度額

在宅系サービスには、要支援・要介護度ごとに利用限度額が設定されています。
(居宅療養管理指導、福祉用具購入費の支給、住宅改修費の支給、生活援助型配食
サービス（市町村特別給付）は除きます。)

要支援 1	1か月あたり 5, 032 単位
要支援 2	1か月あたり 10, 531 単位
要介護 1	1か月あたり 16, 765 単位
要介護 2	1か月あたり 19, 705 単位
要介護 3	1か月あたり 27, 048 単位
要介護 4	1か月あたり 30, 938 単位
要介護 5	1か月あたり 36, 217 単位

施設・居住系サービス

施設・居住系サービスは、要介護 1～5 と認定された方が利用できます。（サービス
によって対象となる方が異なります。）

認知症対応型共同生活介護	認知症の方が共同生活する住宅で、日常生活上の支援や機能訓練などの サービスが受けられます。（要支援 2 の方も対象となります。）
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	指定を受けた特定施設に入居している方が、その施設が行う介護などの サービスを受けられます。（要支援 1・2 の方も対象となります。）
地域密着型特定施設入居者 生活介護	定員 29 人以下の特定施設において介護などのサービスが受けられま す。
介護老人福祉施設 (特別養護老人ホーム)	常に介護が必要で、家庭での介護が困難な寝たきりや認知症の方に対 し、介護を行う施設です。 ※原則、要介護 3～5 と認定された方が対象となります。
地域密着型介護老人福祉施設 (特別養護老人ホーム)	定員 29 人以下の小規模な特別養護老人ホームです。 ※原則、要介護 3～5 と認定された方が対象となります。
介護老人保健施設	状態が安定している方が在宅復帰を目指し、リハビリテーションや介護 が受けられる施設です。
介護医療院	長期療養のための医療と日常生活上の介護を一体的に提供する施設で す。

◎공생형 서비스

방문 개호, 통원 개호, 지역 밀착형 통원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예방 전문형 방문 서비스, 예방 전문형 통원 서비스는 공생형 서비스로서 위치하며 장애가 있는 분이 개호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장애복지 사업소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케어메니저나 현재 이용하시는 사업소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共生型サービス

訪問介護・通所介護・地域密着型通所介護・短期入所生活介護・予防専門型訪問サービス・予防専門型通所サービスは、共生型サービスとして位置づけられ、障害のある方が介護保険を利用する場合、これまで利用していた障害福祉事業所から引き続きサービスを受け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詳しくはケアマネジャーや現在ご利用の事業所などへご確認ください。

5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1)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분(사업 대상자)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요지원 인정을 받으시거나 기본 체크리스트에 의한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개호 및 요지원 인정 신청하신 결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이라도 별도 기본 체크 리스트에 의한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체크 리스트 기입

창구는 거주하시는 지역을 담당하는 이카이키 지원센터 또는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복지과, 지소 구민 복지과입니다.

창구에서 기본 체크 리스트 용지를 배부해 드리므로 기재된 질문에 대해 본인 상태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선택해 기입해 주십시오.

‘기본 체크 리스트’에 의한 판정은 당일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필요한 것

○65 세 이상인 분(제 1 호 피보험자)

개호보험피보험자증

(2)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내용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립 생활을 목표로 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1. 예방 전문형 방문 서비스 홈헬퍼가 자택을 방문해 생활 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체 개호 및 청소, 세탁 등의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생활 지원형 방문 서비스 나고야시가 개최하는 개호와 생활 지원 기술을 배우는 연수를 수료한 분 등이 자택을 방문해 자립을 목표로 한 계획 아래,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 지역 상생형 방문 서비스 지역의 건강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가 자택을 방문해 쓰레기 수거, 전구 교환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일에 대한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단, 지역 상생 수첩 발급 시에 실비 300 엔이 필요합니다.

5 介護予防・生活支援サービス事業

(1) 介護予防・生活支援サービス事業を利用する方（事業対象者）

介護予防・生活支援サービス事業の利用を希望される方は、要支援認定を受けていただくか、または基本チェックリストによる判定を受けて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

要介護・要支援認定の申請をされ、その結果が非該当だった方でも、別途基本チェックリストによる判定を受け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その結果、介護予防・生活支援サービス事業の対象者と判定された場合、この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基本チェックリストの記入

窓口は、お住いの地域を担当するいきいき支援センターまたはお住いの区の区役所福祉課・支所区民福祉課です。

窓口で、基本チェックリストの用紙をお渡ししますので、記載された質問について、ご本人の状態にあてはまる選択肢を選んで記入していただきます。

「基本チェックリスト」による判定は、当日に結果がわかります。

◆窓口で必要なもの

○ 65歳以上の方（第1号被保険者）

介護保険被保険者証

(2) 介護予防・生活支援サービス事業の内容

介護が必要な状態になることを予防し、自立した生活を目指した生活支援のサービスを受けられます。

家庭で利用するサービス	1. 予防専門型訪問サービス ホームヘルパーに居宅を訪問してもらい、生活機能の維持・向上を図るために、身体介護及び掃除・洗濯等の生活支援を受けていただくサービスです。
	2. 生活支援型訪問サービス 名古屋市が開催する介護や生活支援の技術を学ぶ研修を修了した方等に居宅を訪問してもらい、自立を目指した計画のもと、掃除・洗濯・調理等の生活支援を受けていただくサービスです。
	3. 地域支えあい型訪問サービス 地域の元気な高齢者を中心としたボランティアが自宅を訪問し、ゴミ出しや電球の交換等の日常のちょっとした困りごとに対する生活支援を受けていただくサービスです。 ※利用者負担はありません。 なお、地域支えあい手帳の交付にあたっては、実費300円が必要となります。

당일 이용하는 서비스	4. 예방 전문형 통원 서비스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식사 및 목욕 등의 개호와 기능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 미니 데이형 통원 서비스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의 시설에서 자립 생활을 목표로 '이키아이키(활력) 활기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능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6. 운동형 통원 서비스 데이 서비스 센터나 개호노인 보건시설, 피트니스 클럽 등에서 낙상 예방과 다리와 허리 근력 유지를 위해 자택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과 체조 등을 합니다.
서비스 지원 생활	7. 자립 지원형 배식 서비스 자립 생활과 영양 개선 등을 위해 1 일 1 식을 한도로 자택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드립니다. 또한 배달 시에 안부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연락을 합니다.

◆ 이용 한도액

각 서비스(지역 상생형을 제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한도가 있습니다.
요지원 1, 2 인 분이 개호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신 경우, 개호 서비스 이용 분도 포함한 합계 단위로 판단합니다.

요지원 1·사업 대상자	1 개월당 5,032 단위
요지원 2	1 개월당 10,531 단위

日 帰 り で 通 う サ ー ビ ス	4. 予防専門型通所サービス 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等の施設で、食事・入浴などの介護や機能訓練を受けていただくサービスです。
	5. ミニデイ型通所サービス 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等の施設において、自立した生活を目指し、「いきいき元気プログラム」を活用した機能訓練等を受けていただくサービスです。
	6. 運動型通所サービス 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や介護老人保健施設、フィットネスクラブ等において、転倒防止や足腰の筋力保持のため、自宅でもできる軽い運動や体操等を行います。
サ ー ビ ス 生 活 支 援	7. 自立支援型配食サービス 自立した生活や栄養改善等のため、1日1食を限度として、居宅に弁当の配達を行います。また、配達時に安否確認を行い、必要な場合には関係機関等に連絡させていただきます。

◆利用限度額

各サービス（地域支えあい型を除く）には、利用できるサービスの限度があります。要支援1・2の方が、介護サービスもあわせて利用された場合は、介護サービス利用分も含めた合計単位で判断します。

要支援1・事業対象者	1か月あたり 5, 032単位
要支援2	1か月あたり 10, 531単位

6 일반 개호 예방 사업

(1) 일반 개호 예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분

65 세 이상인 모든 분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단, 교재비와 숙박비 등의 실비 부담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보건센터	1. 이카이카(활력) 교실 각 구의 보건센터 등에서 치매 예방, 운동기능, 영양, 구강 등에 관한 개호 예방 교실과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의 보건센터
복지회관	2. 치매 예방 교실 각 구의 복지회관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 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활동을 배우는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의 복지회관
커뮤니티 센터	3. 고령자 활기찬 장수 추진 사업 커뮤니티 센터 등 가까운 장소에서 오락, 취미 교실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의 사회복지협의회
대학	4. 나고야 건강 칼리지 건강 만들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하여 과학적 근거를 중시한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건강 만들기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건강복지국 건강증진과 전화 263-3126
가까운 장소	5. 고령자 살롱 고령자가 가까운 장소에서 부담 없이 모여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역 주민 등이 고령자 살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의 사회복지협의회

6 一般介護予防事業

(1) 一般介護予防事業を利用できる方

65歳以上のすべての方

利用者負担はありません。ただし、教材費や宿泊費等の実費負担は別途必要です。

保健センター	1. いきいき教室 各区の保健センター等において、認知症予防や運動機能、栄養、口腔等に関する介護予防教室や講演会等を開催しています。 【お問い合わせ先】各区の保健センター
福祉会館	2. 認知症予防教室 各区の福祉会館において、認知症予防のための運動を行うほか、認知症予防に役立つ知識や活動について学ぶ教室を開催しています。 【お問い合わせ先】各区の福祉会館
コミュニティセンター	3. 高齢者はつらつ長寿推進事業 コミュニティセンターなどの身近な場所において、レクリエーションや趣味の教室等を通じて仲間づくりのできるプログラムを行っています。 【お問い合わせ先】各区の社会福祉協議会
大学	4. なごや健康カレッジ 健康づくりのきっかけとなるよう、大学と連携して科学的根拠を重視した、楽しく続けられる健康づくり講座を開催しています。 【お問い合わせ先】健康福祉局 健康増進課 電話 263-3126
身近な場所	5. 高齢者サロン 高齢者の方が、身近な場所で気軽に集まり、楽しくふれあいを深めて交流できる場所です。地域の住民の方などが高齢者サロンを開催しています。 【お問い合わせ先】各区の社会福祉協議会

7 이용자 부담 등

(1) 이용자 부담

원칙적으로 소요된 비용(개호 보수) 액수의 10%(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20% 또는 30%)를 부담합니다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의 작성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부담 비율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65 세 이상인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식비나 거주비(숙박비), 이발비용비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부담 비율	기준(아래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30%	①본인의 총소득 금액(※1)이 220 만 엔 이상 ②동일 세대 65 세 이상인 분의 연금수입(※2)과 총소득 금액(연금수입에 관한 소득분을 제외) 합계가 └ 단신 세대 340 만 엔 이상 └ 2 인 이상 세대 463 만 엔 이상
20%	①본인의 총소득 금액(※1)이 160 만 엔 이상 ②동일 세대 65 세 이상인 분의 연금수입(※2)과 총소득 금액(연금수입에 관한 소득분을 제외) 합계가 └ 단신 세대 280 만 엔 이상 └ 2 인 이상 세대 346 만 엔 이상
10%	상기 이외의 분

- 상기 표와 관계없이 64 세 이하인 분, 시정촌민세 비과세인 분, 생활 보호 등을 받는 분의 부담 비율은 10%입니다.

※1 총소득금액이란 전년 1 월부터 12 월까지의 1 년 동안 총소득금액(사업소득, 급여소득, 잡소득 등),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소득금액(특별공제 후),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금액,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 등의 합계액(결손금 이월공제 전)을 말합니다. 또한, 2018 년도 세제 개정에 따른 급여 소득 공제, 공적연금 등 공제 인하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인하가 없었던 경우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산합니다.

※ 2 연금수입에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액 개호 서비스비

동일 세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자 부담금의 1 개월당 합계가 일정 상한액을 넘었을 때는 신청에 따라 그 초과분을 고액 개호 서비스비로 지급합니다. 단, 복지용품 구입이나 주택 개보수에 따른 부담, 시설 거주비(숙박비)나 식비 등은 고액 개호 서비스비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자 부담 상한>		(1 개월당)
이용자 부담 단계 구분		상한액
생활보호 수급자 등		15,000엔(개인)
세대원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	• 노령복지연금수급자 • 연금수입※1 과 총소득금액※2 합계가 80만 엔 이하인 분	15,000엔(개인)

7 利用者負担等

(1) 利用者負担

原則としてかかった費用（介護報酬）の額の1割（一定以上の所得のある方は2割または3割）を負担します（サービス計画（ケアプラン）の作成費用については、利用者負担はありません）。負担割合は、本人や同一世帯の65歳以上の方の所得に応じて決まります。ただし、食費や居住費（滞在費）、理美容代などの日常生活に要する実費は別に負担します。

負担割合	基 準（以下①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場合）
3割	①本人の合計所得金額（※1）が 220万円以上 ②同一世帯の65歳以上の方の年金収入（※2）と 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の合計が 〔単身世帯 340万円以上 2人以上世帯 463万円以上〕
2割	①本人の合計所得金額（※1）が 160万円以上 ②同一世帯の65歳以上の方の年金収入（※2）と 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の合計が 〔単身世帯 280万円以上 2人以上世帯 346万円以上〕
1割	上記以外の方

- ・上記の表にかかわらず、64歳以下の方、市町村民税非課税の方や生活保護等を受けている方の負担割合は1割です。

※1 合計所得金額とは、前年の1月から12月までの1年間の総所得金額（事業所得、給与所得、雑所得など）、土地・建物等の譲渡所得金額（特別控除後）、上場株式等の配当所得金額、株式等の譲渡所得金額などの合計額（損失の繰越控除前）をいいます。なお、平成30年度税制改定に伴う給与所得控除、公的年金等控除の引き下げによる影響を考慮し、引き下げがなかった場合と同額に調整して計算します。

※2 年金収入には、遺族年金や障害年金などの非課税年金は含まれません。

(2) 高額介護サービス費

同一世帯の利用者が支払った利用者負担の1か月あたりの合計が一定の上限額を超えるときは、申請により高額介護サービス費としてその超えた分が支給されます。ただし、福祉用具の購入や住宅改修にかかる負担、施設における居住費（滞在費）や食費などは、高額介護サービス費の対象となりません。

<利用者負担の上限>

(1ヶ月あたり)

利用者負担段階区分	上限額
生活保護の受給者など	15,000円（個人）
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	・老齢福祉年金受給者 ・年金収入※1と合計所得金額※2の 合計が80万円以下の方 15,000円（個人）

세대원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	24,600엔
과세소득 380만 엔 미만	44,400엔
과세소득 380만 엔 이상 690만 엔 미만	93,000엔
과세소득 690만 엔 이상	140,000엔

※ 1 연금수입에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 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총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3페이지를 참조.

(3) 고액 의료 합산 개호 서비스비

‘고액 개호 서비스비’에 추가해 각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피용자보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세대 내에서 1년간(매년 8월부터 다음 해 7월)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이용자 부담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세대의 부담한도액을 뺀 금액이 501엔 이상이 되는 경우 이 한도액을 초과한 분 중 개호보험에 관한 부분을 ‘고액 의료 합산 개호 서비스비’로 지급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로 의료보험자로부터 지급받습니다.

(4) 거주비 및 식비의 이용자 부담

개호보험 시설 및 단기 입소 서비스의 거주비(숙박비), 식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세대의 과세 상황(다른 세대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그 과세 상황도 고려합니다.)에 따라 이용자 부담 단계가 정해지며 그 단계별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또한, 한도액 적용 시에는 자산 요건으로 예금적금 등이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 부담 단계별 적용 요건 및 이용자 부담 단계> (1 일당)

이용자 부담 단계		예금적금 등(※2) <부부의 경우>	거주비(엔)			食費 (円)	
제 1 단 계	생활보험 등 수급자	요건 없음	880	550	550 (380)	0	300
	세대원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인 노령복지연금수급자	1,000 만엔 이하 (2,000 만엔)					
제 2 단 계	세대원 전원이 시정촌민 비과세이며 본인 연금수입 등(※1)이 연간 80 만엔 이하	650 만엔 이하 (1,650 만엔)	880	550	550 (480)	430	600

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	24,600円
課税所得380万円未満	44,400円
課税所得380万円以上690万円未満	93,000円
課税所得690万円以上	140,100円

※1 年金収入には、遺族年金や障害年金などの非課税年金は含まれません。

※2 「合計所得金額」については、13ページを参照。

(3) 高額医療合算介護サービス費

「高額介護サービス費」に加え、各医療保険（国民健康保険、被用者保険、後期高齢者医療制度）における世帯内で、1年間（毎年8月から翌年7月）の医療保険と介護保険の利用者負担額を合算した額から、世帯の負担限度額を差し引いた額が501円以上となる場合、この限度額を超えた分の内、介護保険にかかる部分を、「高額医療合算介護サービス費」として支給します。

なお、医療保険にかかる部分については、「高額介護合算療養費」として医療保険より支給されます。

(4) 居住費・食費の利用者負担

介護保険施設および短期入所サービスの居住費（滞在費）・食費については、本人の所得や世帯の課税状況（別世帯に配偶者がいる場合は、その課税状況も勘案します。）によって利用者負担段階が設けられ、その段階ごとに限度が決められます。

なお、限度額の適用にあたっては、資産要件として、預貯金等が一定額以下であることが必要です。

＜利用者負担段階別の適用要件と利用者負担段階＞ (1日あたり)

利用者負担段階		預貯金額等（※2） (夫婦の場合)	居住費（円）				食費（円）	
			ユニット型個室	ユニット型個室的多床室	従来型個室	多床室	短期入所	施設
第1段階	生活保護等受給者	要件なし	880	550	550 (380)	0	300	300
	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の老齢福祉年金受給者	1,000万円以下 (2,000万円)						
第2段階	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かつ本人年金収入等（※1）が年間80万円以下	650万円以下 (1,650万円)	880	550	550 (480)	430	600	390

제3 단 계 ①	세대원 전원이 시정촌민 비과세이며 본인 연금수입 등(※1)이 연간 80 만엔 초과 120 만엔 이하	550 만엔 이하 (1,550 만엔)		1,370	1,370	1,370 (880)	430	1,000	650
제3 단 계 ②	세대원 전원이 시정촌민 비과세이며 본인 연금수입 등(※1)이 연간 120 만엔 초과	500 만엔 이하 (1,500 만엔)						1,300	1,360

*1 총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한 소득분을 제외)과 과세 연금수입액과 비과세 연금수입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또한, '총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3페이지를 참조.

*2 제2호 피보험자의 예금적금 등의 기준은 1,000 만 엔입니다.

* 거주비의 ()안 금액은 개호노인 복지시설 또는 단기 입소 생활 개호를 이용한 경우의 금액입니다.

(5) 치매 고령자 그룹홈 거주비 조성

치매 고령자 그룹홈을 이용하는 일정 요건 등을 충족하는 분(예금적금 등이 일정액(※1) 이하이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분(※2))에게 거주비(집세 및 광열수도비)를 보조해 드립니다.

소득 요건	助成額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3)로 본인의 전년 연금수입(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비과세 연금을 포함)과 총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한 소득분을 제외)(※4) 합계가 80 만 엔 이하인 분	20,000 엔/월(상한)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3)로 본인의 전년 연금수입(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비과세 연금을 포함)과 총소득금액(연금수입에 관한 소득분을 제외)(※4) 합계가 80 만 엔을 초과하는 분	10,000 엔/월(상한)

(※1) 단신으로 1,000 만 엔, 부부로 2,000 만 엔입니다.

(※2) 생활 보호 수급자,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 급부 수급자는 제외합니다.

(※3) 다른 새대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판정에 포함됩니다.

(※4) '총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3페이지를 참조.

(6) 이용자 부담 감면

재난으로 인해 주택 등에 현저한 피해를 입었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장기간 입원함으로 인해 이용자 부담 지불이 곤란한 분은 신청을 통해 이용자 부담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구청 복지과 또는 지소 구민 복지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第3段階①	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かつ本人年金収入等(※1)が年間80万円超120万円以下	550万円以下 (1,550万円)		1,370	1,370	1,370 (880)	430	1,000	650
第3段階②	世帯全員が市町村民税非課税かつ本人年金収入等(※1)が年間120万円超	500万円以下 (1,500万円)						1,300	1,360

※1 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と課税年金収入額と非課税年金収入額の合計を指します。なお、「合計所得金額」については、13ページを参照。

※2 第2号被保険者の預貯金額等の基準は、1,000万円です。

* 居住費の()内の金額は、介護老人福祉施設または短期入所生活介護を利用した場合の金額です。

(5) 認知症高齢者グループホーム居住費助成

認知症高齢者グループホームを利用する一定の要件等を満たす方（預貯金等が一定額(※1)以下であり以下の要件に該当する方（※2））に対して、居住費（家賃・光熱水費）を助成します。

所得要件	助成額
市町村民税非課税世帯(※3)で、本人の前年の年金収入（遺族年金・障害年金等の非課税年金を含む）と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4）の合計が80万円以下の方	20,000円／月（上限）
市町村民税非課税世帯(※3)で、本人の前年の年金収入（遺族年金・障害年金等の非課税年金を含む）と合計所得金額（年金収入に係る所得分を除く）（※4）の合計が80万円を超える方	10,000円／月（上限）

(※1) 単身で1,000万円、夫婦で2,000万円です。

(※2) 生活保護受給者、中国残留邦人等支援給付受給者は除きます。

(※3) 別世帯に配偶者がいる場合は、その配偶者も判定に含みます。

(※4) 「合計所得金額」については、13ページを参照。

(6) 利用者負担の減免

災害により住宅などに著しい損害を受けたことや、生計を支えている方が長期間入院したことなどにより、利用者負担の支払いにお困りの方は、申請により利用者負担が減免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お住まいの区の区役所福祉課または支所区民福祉課にご相談ください。

개호보험제도 관련 상담 및 문의처

명칭	전화	FAX
지쿠사구청	7 5 3 - 1 8 4 8	7 5 1 - 3 1 2 0
히가시구청	9 3 4 - 1 1 9 5	9 3 6 - 4 3 0 3
기타구청	9 1 7 - 6 5 2 3	9 1 4 - 2 1 0 0
구스노키지소	9 0 1 - 2 2 6 9	9 0 1 - 2 2 7 1
니시구청	5 2 3 - 4 5 1 9	5 2 1 - 0 0 6 7
야마다지소	5 0 1 - 4 9 7 5	5 0 4 - 7 4 0 9
나카무라구청	4 3 3 - 2 9 0 6	4 3 3 - 2 0 7 4
나카구청	2 6 5 - 2 3 2 4	2 4 1 - 6 9 8 6
쇼와구청	7 3 5 - 3 9 1 4	7 3 1 - 8 9 0 0
미즈호구청	8 5 2 - 9 3 9 6	8 5 1 - 1 3 5 0
아쓰타구청	6 8 3 - 9 4 0 4	6 8 2 - 0 3 4 6
나카가와구청	3 6 3 - 4 3 2 7	3 5 2 - 7 8 2 4
도미다지소	3 0 1 - 8 3 7 6	3 0 1 - 8 6 6 1
미나토구청	6 5 4 - 9 7 1 5	6 5 1 - 1 1 9 0
난요지소	3 0 1 - 8 3 4 5	3 0 1 - 8 4 1 1
미나미구청	8 2 3 - 9 4 1 5	8 1 1 - 6 3 6 6
모리야마구청	7 9 6 - 4 6 0 3	7 9 3 - 1 4 5 1
시다미지소	7 3 6 - 2 1 9 2	7 3 6 - 4 6 7 0
미도리구청	6 2 5 - 3 9 6 4	6 2 1 - 6 8 4 1
도쿠시게지소	8 7 5 - 2 2 0 7	8 7 5 - 2 2 1 5
메이토구청	7 7 8 - 3 0 9 7	7 7 4 - 2 7 8 1
덴파쿠구청	8 0 7 - 3 8 9 7	8 0 2 - 9 7 2 6

나고야시 개호 보험 홈페이지 『NAGOYA 개호 넷』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설명과 개호 서비스 사업자 검색 등 나고야시의 개호보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igo-wel.city.nagoya.jp/view/kaigo/top>

발행/나고야시 건강복지국 고령복지부 개호보험과 TEL 972-2591 FAX 972-4147

이 팸플릿은 2024년 6월 현재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령 등의 공포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팸플릿은 폐지 펄프를 포함한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